##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개정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I.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I.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п. 추진체계 및 운영	п. 추진체계 및 운영	
+1 34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ш.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p.1
차 례	IV.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정보시스템	IV.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정보시스템	문구 수정
	V.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V.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VI. 시범사업 효과평가	VI. 시범사업 효과평가	
│.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4.시범사업 개요	나. 사업대상 1) (대상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  *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  <생 략>	나. 사업대상         1) (대상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생 략>	p.3~4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
	<신 설>	다. 서비스 제공 인력  1) 서비스 인력 구성  ○ 서비스 제공 인력은 복막투석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교육상담 I·Ⅱ, 환자관리)를 수행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말한다.	서비스 제공인력 상세 설명 및 인력현황 신고 경로 추가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2) 서비스 인력 자격  ○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해당 분야 전문의(세부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를 말한다.  ○ 간호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인력현황 신고  ○ 시설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 시설현황→팀운영 및 병동 운영현황 신고→신규신고→신규 병동에서 병동구분: '특수' * 병동코드/병동명: '복막투석 재택관리팀' 선택하여 신고  <생 략>	
	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절차  시범사업 참여 신청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시범 기관  ***********************************	※ 개정내용 본문 참조  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절차  참여 신청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시범 기관  환자동의서 개별 요양기관 보관  ※ 점검서식 작성·제출방법: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시범사업 서식관리→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대상자 등록 및점검서식 작성 → 자세한 방법은 IV.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정보시스템(p.22~p.32) 참고	p.5 정보시스템 관련 경로 추가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u>라.</u>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 내용	<u>마.</u>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 내용	
	<생 략>	<생 략>	p.5
	○ (교육상담료 II)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합병증 예방 등 복막 투석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상담 제공 시 산정	○ (교육상담료 II) 의사 또는 간호사가 <u>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u> <u>중인 환자를 대상으로</u> , 합병증 예방 등 복막투석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제공 시 산정	세부 내용 수정 (교육상담료 II 입원환자 포함)
	<생 략>	<생 략>	
	<ul><li>사. 시범사업 기간</li><li>○ 시범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li></ul>	<ul><li>아. 시범사업 기간</li><li>○ 시범사업 시작일('19.12.16.)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li></ul>	p.6 시범사업 기간 추가
Ⅲ.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1.요양급여	<ul> <li>가.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li> <li>1) 급여의 범위</li> <li>&lt;생 략&gt;</li> <li>2) 급여비용의 부담</li> <li>○ 요양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li> </ul>	<ul> <li>가.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li> <li>1) 급여의 범위</li> <li>&lt;생 략&gt;</li> <li>2) 급여비용의 부담</li> <li>○ 본 지침 'Ⅲ -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의 항목에 한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li> </ul>	p.9 상세 설명 및
기준 	<생 략> <u>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기금이</u> <u>부담한다.</u>	10월 전간이 무급한다.       단한다.         전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및「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100분의 10보다 낮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특정 기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문구 수정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 그 외 요양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 및 별표1의 규정을 따른다.	
2.산정지침	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는 복막투석 관리 및 개인정보제공 등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등록된 환자에게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생 략>	<ul> <li>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이하 '재택관리료')</li> <li>1) 재택관리료는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등록한 환자에게 재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li> <li>2)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는 교육상담료 I, 교육상담료 II, 환자관리료를 말한다.</li> <li>3)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의 교육상담료 I과 환자관리료는 외래에서, 교육상담료 II는 입원·외래에서 산정한다.</li> <li>4)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li> <li>&lt;생 략&gt;</li> </ul>	p.10 상세 설명 및 문구 수정 (교육상담료 II 입원환자 포함)
	나. 교육상담료  <생 략 >  4) '교육상담료Ⅱ'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기기사용법, 질환- 건강관리 등에 대해 1인의 환자를 1대1로 회당 최소 2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1일 1회 이내로 초기년도 연 6회 이내, 차기 년도부터 연 4회 이내로 산정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생 략>	※ 개정내용 본문 참조 나. 교육상담료 (대) : 교육상담표 (대) : 교	p.11 문구 수정 (교육상담료 II 입원환자 포함)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구분	<사업 세부모 교육	·형 > 상담료	
		세부구분	<b>교육상담료 I</b> 의사	교육상담료 II 의사 또는 간호사	
		교육내용	전문적·심층적 교육	기기사용법, 질환·건강관리	
		실시 <del>횟수</del> 및 시간	초기연도 연 4회 이내 차기연도 연 2회 이내 (매회 15분 이상)	초기연도 연 6회 이내 차기연도 연 4회 이내 (매회 20분 이상)	
		수 가 ('21년 기준)	39,950원 <b>환자 본인부담률 10%</b> <b>적용</b>	25,170원 <b>환자 본인부담률 10%</b> 적용	
	<u>&lt;신 설&gt;</u>	구분	환자	관리료	p.14 사업 세부모형
		실시인력	의사 또	는 간호사	추가
		환자관리 서비스	및 환경, 도관관리 등 · 서비스 제공: 체중/제수량 측정 투석 등 방법 및 주의사항 교· · 정보시스템 입력: 시범시업 자료/	배액상태, 복막투석을 위한 위생 정방법, 식이운동요법, 손투석/기기 육, 질병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레출 시스템(https://aq.hira.or.kr/mc/) 방법(전화, 문자 등)으로 환자 임상	
		실시횟수		월 2회 이상, (자동) 주 3회 이상 비공한 경우 월 1회 신정	
		수 가 ('21년 기준)	1	000원 <b>!부담 면제</b>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병원 점수당 단가: '20년 76.2원 기준						병원 점수당 단가: '21년 77.3원 기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21년	
3.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복부투석 환자 재택 관리료	IB510 -IB511 IB520 IB530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  가. 교육상담료 (1) 교육상담료 I  주. 투석유형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 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한다.  (2) 교육상담료 II  나. 환자관리료	516.82 325.63 349.26	39,380 24,810 26,610	<del>복박투</del> 석 환자 재택 관리료	IB510 -IB511 IB520 IB530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  가. 교육상담료  (1) 교육상담료 I  주. 투석유형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  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한다.  (2) 교육상담료 II  나. 환자관리료	516.82 325.63 349.26	39,950 25,170 27,000	p.15 '21년 수가 기준 금액 수정
	나. 명서 1) 일	서 작 반내역	성요령			나. 명서 1) 일	서 작 반내역	= =			
	항목		세부작성요령			항목		세부작성요령			
4.요양급여	요양급( 일수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 한다.	벾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요양급( 일수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 한다.	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p.17
비용 청구방법	총내원일	수   <sup>[</sup>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다만, 동일 날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다 내원일수는 "0"으로 기재한다.	나업 내역을 .		<u>입원일</u> 총내원일		입원 또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 다만, 동일 날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시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다 내원일수는 "0"으로 기재한다.	·업 내역을	모두 실시하는	문구 수정 및 추가 (교육상담료 II 입원환자 포함)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2) 상병	내역	2) 상병	내역	
			항목           면허종류,           면허번호	세부작성요령  ☐ 명세서 상병내역에는 시행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상병 (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된 상병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분류기호 중요도 순으로 각각 기재 - 시범사업 명세서는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에 만성 신장병 5기	상병 분류기호	□ 통계청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순으로 기재하되,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 (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된 상병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각각 기재		
	내원일자	□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 일자를 기재한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내원한 일자를 기재한다 환자관리료의 경우 환자별 마지막 실시·기록한 일자에 산정한다.		- 시범사업 명세서는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에 만성 신장병 5기 (질병코드 N18.5) 기재	
		- 된지진디묘의 영구 된자를 마시되 글자기속인 글자에 선정인다.	내원일자, <u>당월요양</u> <u>개시일</u>	<ul> <li>☐ (내원일자)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 일자를 기재한다.</li> <li>- 교육상담료의 경우 내원한 일자를 기재한다.</li> <li>- 환자관리료의 경우 환자별 마지막 환자관리를 실시·기록한 일자에 산정한다.</li> <li>☐ (당월요양개시일)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경우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 진료를 위하여 그 달에 최초 입원한 년·월·일을 기재한다.</li> <li>단,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 시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최초 진료일자를 기재한다.</li> </ul>	
IV. 복막투스	! 환자 <b>자</b>	H택관리 정보시스템			
1.정보시스템	가. 요양기	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및 인증서 로그인	. 22 22
접속 ~ 5공지사항		<u>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이료 서비스] - [복막투석 환자</u> 리 시범사업] 선택	<u>나. [시범/</u> <생 략>	사업 서식관리]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선택	p.22~32 접속 경로 변경 및 세부 내용 수정
			※ 개정니	내용 본문 참조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별첨. 시범시	나업 관련 질의응답		
Q10	입원환자에게 교육상담1을 실시한 경우 수가산정이 가능한가요? ○ 동 수가는 외래환자에게 적용되는 수가이므로 입원환자에게는 수가산정이 불가합니다.	입원환자에게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교육상담료 I, 교육상담료 II 수가산정이 가능한가요?  ○ 교육상담료 I의 경우 외래환자에게만 적용되나, 교육 상담료 II의 경우 외래, 입원환자에게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p.52 관련 Q&A 수정
Q11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가요?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는 공지된 사업 시작일 이후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함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가요?  O 사업 시작일 이후 대상자에게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되는 교육상담료 점검서 및 환자 관리료 점검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p.52 문구 수정
Q15	교육상담료 II와 환자관리료의 실시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세부 전문의 포함)또는 진료담당 전문의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를 말하며, 시범기관소속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요양기관 현황(변경)신고서 상, 신고된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하여 시행 가능합니다.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를 말하며, 시범기관 소속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p. 54 입원환자 산정에 따른 간호인력 설명 추가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Q16	<신 설>	인력현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인력 현황신고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력 현황 신고 공통 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천황신고 변경 - /인력현황 의사 의(약/조산)사 신고→근무병동→'복막투석 재택관리팀'등록 * 신장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등록 가능 간호사 간호인력 신고→근무병동→'복막투석 재택관리팀'등록	p.54 인력신고 관련 안내 추가
Q17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을 분리청구 해야 하나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을 분리청구 해야 하나요?  ○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 내역(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과 비시범사업내약(다른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는 'S016'을 기재하고, 총내원일수(입원일수)란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p.55 세부 내용 수정
Q18	<u>&lt;신 설&gt;</u>	입원 중인 시범사업 참여 환자에게 교육상담표를 시행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입원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연속된 날짜에 교육상담 표를 시행한 경우 <sup>예1)</sup> , 최초 교육상담을 시작한 일자를 요양개시일로 기재하고 교육상담 표를 시행한 횟수 및 일수를 일투 및 총투에 기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p.56 Q&A 추가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 연속되지 않은 날짜에 교육상담 표를 시행한 경우 <sup>예2)</sup> , 각 교육을 시행한 일자를 요양개시일로 하여 입원 명세서에 분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본문 참조	
Q19	<u>&lt;신 설&gt;</u>	교육상담이나 비대면 환자관리를 시행한 후 당일에 환자가 입원하게 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교육상담) 외래에서 교육상담을 시행한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입원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관리) 비대면으로 환자관리 시행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환자관리료 수가는 외래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본문 참조	p.57 Q&A 추가
Q21	<신 설>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가 신포괄수가 대상기관에 입원 시, 시범수가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대상자가 신포괄 시범기관에 신포괄질병군으로 입원하는 경우 시범사업 내역은 입원 진료 내역(원청구)과 분리하여 별도로 추가청구*하며,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는 'S016'을 기재 하고 총내원일수란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 관련 수가는 전액 비포괄 항목으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 사업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 추가청구 구분 코드: 2	p.58 신포괄수가 관련 Q&A 추가
Q22	<u>&lt;신 설&gt;</u>	이중 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신포괄수기제 청구방법은 무엇인가요?	p.58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이외의 진료내역은 공상 구분자에 보훈자격(4)을 기재하여 신포괄수가를 적용 후 원청구 하고, 재택관리 시범사업 진료내역은 공상 구분자에 보훈자격(4)을 삭제 하여 추가청구 합니다.	신포괄수가 관련 Q&A 추가
Q26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이용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자략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복막투석 환자 자략관리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시범사업 서식관리→복막투석 환자 자택관리→대상자 등록 및점검서식 작성	p.59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경로수정
<b>Q27</b>	교육상담료 점검서 및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등록 후 교육상담 I, 교육상담 II, 환자관리 실시횟수 클릭 시 해당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요앙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교육상담료 점검서 및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등록 후 교육상담 I, 교육상담 II, 환자관리 실시횟수 클릭 시 해당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시범사업 서식관리→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대상자 등록 및 점 검서식 작성	p.59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경로수정